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요 준수사항

산업재해 발생시 관할지방 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발생보고(제10조)

산업재해 발생시는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 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중대재해 발생시는 지체없이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사항을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요 준수사항

사업장에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안전표지의 부착(제12조)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 안내, 기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 ·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합니다.

위험방지에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해야합니다.

안전상의 조치(제23조)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기계 · 기구 등에 의한 위험 및 폭발, 추락, 물체의 낙하 · 붕괴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안전 · 보건상의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준수사항(제25조)

-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안전상의 조치(제23조) 및 보건상의 조치(제24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2005년 6월부터 주요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에 대하여 경고 조치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일정규모 이하의 현장은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제30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아래와 같은 현장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건축공사 :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
- 토목공사 : 공사금액 3억원이상 150억원 미만 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제30조)

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실시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작성하거나 자체사업 계획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요 준수사항

건설가설기자재는 반드시 성능검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유해 · 위험기계 · 기구 등의 방호 조치(제33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30종의 가설기자재는 성능검정을 받은 합격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합격된 제품은 아래와 같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검정품의 종류

구 분	검정품목	종 류
거푸집 동바리류	파이프써포트, 보조지주	2종
강관 틀비계류	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작업대, 선반지주	5종
단관 비계류	단관 비계용 강관, 외줄 비계용 작업대 및 그 지지철물	2종
이동식 비계류	주틀 및 각륜	1종
연결 철물류	벽 연결용 철물, 강관 틀비계용 주틀의 암록, 단관 비계용의 단관 조인트, 크램프 강관 틀비계용 주틀의 연결핀	5종
받침 철물류	고정형 받침철물, 조절형 받침철물	2종
달비계용 부재	달기체인, 달기틀	2종
'97년 상반기 추가품목 (98.1.1부터 제조, 사용)	수직보호망, 이동식 비계용 난간틀, 방호선반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5종
'98년 상반기 추가품목 (99.1.1부터 제조, 사용)	안전난간지주, 통로용 작업발판, 철골용 크램프 측벽용 브라켓, 안전방망. 피벗형 받침철물	6종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 사용 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 및 설비등의 검사 (제34조)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등을 설치 · 사용하는 현장은 사용전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중에는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자체검사(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 3월에 1회이상
- 정기검사 : 최초 검사일로부터
  · 타워크레인 : 매 2년마다
  · 건설용리프트 : 매 1년마다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건강진단(제43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작업환경 측정 실시, 시설 ·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 처리절차

재해자 발생

↓

병원후송 및 보고

① 의료기관
② 관할지방 노동관서(재해조사표) 보고
• 요양신청서로 갈음 가능

↓

산업재해 요양신청

① 요양신청서(3부)
② 의사 소견서(날인)
③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휴업급여 청구

① 휴업급여 청구서(3부)
② 병원확인
③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주 1 :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갑근세 납부증명서
※ 주 2 : 평균임금의 70% 지급(평균임금 산정처리)

↓

장애급여 청구

① 청구서(3부)
② 병원확인
③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유족보상 청구 (사망시)

① 청구서(3부)
② 사망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장의비 청구 (사망시)

① 청구서(3부)
② 사망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